

법무행정직렬

2017년 5급 공채 법무행정직렬 수석합격

송진규

I. 서론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벌써 2차 시험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공부의 충분성이 시험생은 이미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면 2차 시험 한 달 전까지 서브노트를 다 만들지 못해 계속 매달려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으니 지금 마무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페이스대로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II. 총론

1. 읽는 공부와 쓰는 공부

많은 수기나 공부방법론에서 답안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많이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짧게는 1년간 길게는 수년간 공부한 것을 측정하고 평가받는 것은 시험장에서 작성하는 열 페이지 가량의 답안지뿐 이므로 쓰는 공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는 공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예비

순환이나 1순환을 듣고 아무리 답안을 작성해 봐야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현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사례집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안 등을 충분히 읽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후에 쓰는 공부로 나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쓰는 공부: 답안작성 vs 서브노트

쓰는 공부에는 크게 답안을 직접 작성하는 것과 서브노트를 만드는 작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매일 100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면서 그날 수업분량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실력을 쌓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엄청나지 않은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즉, 모든 범위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서 그 가운데 답안에 현출할 부분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서브노트가 되고 반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 서브노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내면 그것이 바로 답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귀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범위에 대해 답안에 현출해낼 내용을 갈무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채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했는데 그 이유로는 1. 매번 답안을 작성하면서 쓰게 되는 서론이나 문제의 소재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2.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 직전에 빠르게 볼 수 있거나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에 편하고, 3.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하루하루 쌓이는 답안지를 보면서 가시적인 학습량을 측정할 수 있다거나, 실제 답안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가진 답안작성도 분명 채택할 이유가 있는 방법입니다.

3. 강약조절

다른 과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민법은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주제를 같은 강도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수기도 적었듯이(고시계 2018. 4월호 참조) 강약판단의 기준은 기출문제입니다. 저는 국가고시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서 주요기출주제를 선정한 후에 그 빈도를 서브노트에 표시하는 식으로 중요도를 선정했고, 실제로 작년 민법 1문의 상계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해행위 취소의 소, 사용자책임, 위자료 청구, 점유취득시효 등은 모두 빈출 주제로 선정된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나아가 같은 과목이 출제되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되는

주제 역시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출제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험만으로 중요도 선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III. 각론

1. 민법

2차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적었듯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에 따라 중요도를 선정하고 그 위주로 공부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2. 법률행위의 해석
3. 계약당사자 확정
4. 부동산 이중매매(사회적 타당성)
5.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6. 점유취득시효
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9. 공동불법행위
10. 미성년자의 감독자 등의 책임
11. 사용자책임
12. 위자료청구권

나아가 5급 공채 민법과목에서 친족상속권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부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작년 2문에서 사실혼배우자의 위자료청구권이 갑자기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전에도 친족상속권과 재산법의 영역에 걸쳐있는 영역

에서 종종 출제가 이루어지곤 했으니 상속에 관련된 논점이라고 바로 지나치는 것은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한두 문제씩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1문의 상계관련 문제는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알고 쓴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학부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었고, 실제 재판절차를 상상하면서 공부하면 의외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민사소송법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법 못지않게 양이 방대하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주제라 거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추리고 추린 중요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관할, 변론관할
2. 국제재판관할
3. 제소 전/ 계속 중 사망
4. 소의 이익(전체)
5. 장래이행의 소
6. 채권자대위소송
7. 당사자의 결석
8. 소 취하 및 재소금지
9.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0. 필수적 공동소송
11. 독립당사자참가
12. 임의적 당사자변경

16년 이전 시험에서는 항상 다수당사자소송이 어렵게 출제되어 민사소송법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다수당사자소송이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어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다시 다수당사자소송 부분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니 특히 그 부분에 주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밖에 민사소송법 답안을 한결 좋아보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소송법적 의의를 적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항변사항인지, 그 자료수집은 어떤 방식에 의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법

행정법은 다른 직렬도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인 만큼 수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 공급, 즉 강사님들이나 교재도 충실하게 마련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무행정직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행정법 시준에는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기간 내내 정선균 박사님 강의를 듣고 교재도 엑기스 시리즈만 보았는데 다행히 그것만으로도 대비하는 데에 충분했고, 행정법 때문에 떨어질 만한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엑기스 삼위일체 가운데 특히 백미는 핸드북으로 다른 강사님들 수강생이라도 핸드북만큼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북은 제 모든 서브노트의 원형으로 2단 편집, 논점별 목차, 각주 방식 등 대부분의 포맷을 엑기스 핸드북에서 따왔습니다. 혹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하려는 수험생은 이 양식을 충실히 따라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은 유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주제를 선정한 것은 없고 행정법 답안의 출발이자 끝이 되는 행정소송법 분야 특히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전심절차 준수여부 등의 소송요건 파트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관할이나 이송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 유력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분야이지 행정법에서 이를 출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4. 행정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관계로 다른 사회과학과목을 공부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아마 많은 법무행정직 수험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학은 적어도 법전과 판례라는 답안작성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행정학은 그런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문제로 출제되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형화된 답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니 이를 염두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주제는 제가 선정하는 것보다 강사님들이 3순환 기간에 강조하는 부분이 훨씬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작년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법무행정직 수험생들이 아마도 행정학에 대해 배경 지식이나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 반드시 학원 강의를 정석적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공부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합격생 중에는 객관식 행정학을 기반으로 공부한 분도 계시는 만큼 꼭 교수님들의 저서나 학원강의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5. 선택과목: 상법

상법은 민사소송법 다음으로 많은 공을 들여서 서브노트를 작성한 과목입니다. 그만큼 내용도 충실하고 완성도도 높는데 이번에 원하던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과목입니다. 우선 상법과목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출제 비중이 거의 정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회사편에서 25점 내지 30점, 총칙 및 상행위편에서 10 내지 15점, 어음수표법이나 보험편에서 10내지 15점으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편에 방점을 찍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어음수표법과 보험편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편의 출제 빈도나 비중이 더욱 높으므로 둘 중에는 보험편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상법과목에서 주요 주제로 선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인의 개념 및 자격 취득시기
2. 상업등기
3. 명의대여자의 책임
4. 영업양도
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미필주주의 법적 지위
6. 주식양도와 그 금지
7. 주주의 권리(제안권,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등)
8.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
9.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및 기타 의무
10.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11. 보험약관교부 및 명시 의무
12. 타인의 생명보험

16년 이전까지 시험에서 회사편에서 주로 이 사나 기타 임원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작년에도 이를 중심으로 대비하고 들어갔는데 회사설립에 관한 문제가 나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건대 작년에 설립에 관한 문제가 나온 만큼 올해는 다시 이사 등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련된 대표소송이나 유치청구권과 같은 주주의 통제수단이 다시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행히도 상법에서는 특별히 불의타 문제를 내는 경향이 현저하게 적어 어느 정도 수험생들의 부담이 낮은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주로 사용되는 조문이 여기저기 흩어져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더욱 법전을 자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IV. 결 론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수험생 여러분의 긴장과 불안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이맘때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지금까지의 인고의 시간과 겪어 온 고통이 헛되이 되지 않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의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감, 불안, 우울함 같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붙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으로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남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불멸이라는 장군의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고 이 때문에 불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40여 일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무운을 빕니다.